의 안 번 호	1794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7. 13.(금), 강혜경 의원 외 5명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1. 8. 20.(금)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1. 9. 2.(목)

2. 제안설명 요지(강혜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출산 ·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정서적 의지 동반자로서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는 반려동물이 증가 추세에 있어

○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참여와 협력(안 제3조 ~ 안 제4조)

○ 소유자 등의 주의사항,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안 제6조)

○ 협력체계의 구축, 반려동물문화 조성(안 제7조 ~ 안 제8조)

○ 교육 및 홍보, 포상(안 제9조 ~ 안 제10조)

○ 시행규칙(안 제11조)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22조
○「동물보호법」제4조 및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미경)

○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등 외로움이 시대정서인 현대사회의 가족 구성원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애완동물을 단순히 사랑하는 동물을 넘어서 삶의 동반자, 반려자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이 부족하여 학대나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 관리되는 등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학대 및 유기에 관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 안 제1조 목적 규정 등 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배된다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 ·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 · 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 · 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 · 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장(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이하 “시 · 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 ·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 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 · 약물 등 물리적 ·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 · 광고 · 오락 ·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 · 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 · 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 전시 · 전달 ·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